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54
----------	------

2013년 7월1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4월 5일 최호정 의원(찬성자 11명)
- 나. 회부일자 : 2013년 4월 8일
- 다. 상정일자 : 제24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 4월 23일(보류)
- 라. 재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 7월 2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호정 의원)

가.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지원사업의 선정과 지원금액을 시장의 재량으로 결정하여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 규정의 신설 및 비대상 지원 사업(영리·천목·특정정당 등)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과 규정의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을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보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중,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지원할 수 없도록 신설함(안 제9조제2항).
-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을 시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존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에 그 권한을 부여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종료 후 지원을 받는 주민이 지원사업 종료 후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3).
- 5)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5조제4항 각 호).

3.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대상 제한(안 제9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u>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u> 1.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개정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있어서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 및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대상을 다음 표와 같이 예시하고 있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대상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개정안 중 정치활동 또는 종교선교활동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개선계획(2013.1.17)’을 통해 특정정당 지지 및 특정종교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한 활동을 금지한 바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다만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이 담고 있는 바, 친목 목적 사업의 경우에는 마을이라는 공간적·사회적 범위에서 주민자치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ی겠다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일부 비판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하겠음.
- 그러나 집행부는 대부분의 마을사업이 기본적으로 친목이 부수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했음.
- 하지만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친목모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선정시 탈락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바, 개정안의 ‘친목 목적 사업 지원 제한’ 규정은 주의적 규정에 불과할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됨.

※ 현행 조례의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제9조)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수적으로 참여 시민간의 친목을 얻을 수 있다면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으나, 친목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다 신중한 업무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또한 개정안의 '영리목적 제한' 규정에 대해서 집행부는 영리가 목적이거나 부수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예산이 지원되는 (마을만들기사업 관련)영리목적 사업이 이윤창출과 함께 지역의 공익적 목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는 개개의 사업 계획심사를 통해 심사하고 있다고 함.
- 검토하건데 민법상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는 바, 공익을 추구하면서 부수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은 중간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의 범주에 포함하여 해석되고 있음.
- 민법상의 해석론을 차용한다면 개정안은 '공익이 아닌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또는 주민)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 집행부가 예시한 지원대상(청소년 휴카페, 마을예술창작소 등, 참고자료 참조)이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인지 여부와 함께 영리목적단체의 경우 시(市)의 예산 지원 필요성과 지역내 기여도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사실조사에 기초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위원회에 대한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선정 의결권 부여(안 제10조의2 및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지원신청) <u>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0조(지원신청) <u>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u></p> <p>제10조의2(지원사업 선정) <u>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보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u></p>
<p>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u>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u>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1. (생략) 2. <u>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u></p>	<p>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 ----- <u>심의·의결하고</u> ----- ----- <u>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둔다.</u> ② <u>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 1. (현행과 같음) 2. <u>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u></p>

- 개정안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또는 구청장)의 권한을 삭제하고 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그 권한을 강화하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임.

- 마을만들기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소액의 지원금액(300만원 이하)이 친목 등의 목적인 단체 또는 모임에 지급됨으로써 시장(市長)에 의한 시혜성 예산집행 논란을 막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임(안 제14조제1항제2호).
- 집행부는 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을 부여할 경우 지나친 업무하중으로 인한 효율적 위원회 운영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시장에게 현행과 같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각 부서별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되어 설치되어 있는 ‘사업선정심의회’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심의회 위원을 공무원을 포함한 주민대표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음.
- 집행부가 조례의 근거 없이 각 부서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선정심의회를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대안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보다 총괄적인 시각과 안목으로 사업 전반을 심사하고 의결하며, 그 결과를 추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3) 기 타

- 개정안은 마을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의 지원대상·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의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는바, 집행부가 표준절차(2012년5월수립)를 통해 기반영하고 있는 절차를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안 제7조제4항).
- 그러나 개정안(안 제10조의2제1항)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선정 결과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선정결과를 ‘시보’에 모두 게재하기는 그 분량 등을 감안할 때 실무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집행부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적으로 공고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0조의3(보고 등) <u>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는 주민은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 또한 개정안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받은 주민은 지원사업 종료후에 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안 제10조3).
- 개정안에 따를 경우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소요된 예산의 적합성·자부담 비율 준수여부·지역 파급효과·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2명 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 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5조(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현행과 같음) 2. <u>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비영리민 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 동하고 있는 자</u> 3. <u>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 단체 및 행정학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 는 자</u> 4. <u>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민</u>
〈신 설〉	
〈신 설〉	

-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개정안은 그 자격과 경력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있는 바, 집행부는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나, 안 제15조제4항제2호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간 활동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민간활동경력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활동 기간을 제외한 ‘마을공동체만들기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 활동 경력’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안 제15조제4항제4호(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민)를 통해 객관적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민간활동경력 검증이 어렵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 경력의 소유자에게는 위원회 및 마을만들기 유관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급조된 경력의 소유자를 막기 위한 최소한도의 경력을 명시하는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마을카페와 같은 운영형태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대한 영리목적 제한 규정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발생 우려를 반영하고, 지원사업 선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위원회보다는 각 사업부서별로 구성된 사업선정심의회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 및 수정함.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54
----------	------------

제안년월일 : 2013년 7월12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마을카페와 같은 운영형태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대한 영리 목적 제한 규정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발생 우려를 반영하고, 지원 사업 선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위원회보다는 각 사업부서별로 구성된 사업선정심의회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 하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 및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을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제4항).
- 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중,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지원할 수 없도록 신설함(안 제9조제2항).
- 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선정을 시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선정 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 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종료 후 지원을 받는 주민이 지원 사업 종료 후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등을 시장 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3).

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5조제4항 각 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수정안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4항 중 “지원계획에”를 “지원계획과”로 하고, “지원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보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지원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안 제10조제1항 중 “시장”을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제2
항 중 “시장”을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안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사업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선정심의회는 주민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10인 이
내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
한다.

안 제11조제2항 중 “관련단체 등이”를 “관련단체 등을”으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심의·의결”을 “심의”로 하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의결”을 “심의”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시”로 한다.

안 제1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 ~ 제6조 (생략)</p> <p><u>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u> <u>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u> <u>매년 서울시 마을공동체</u> <u>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u> <u>(이하 "시행계획"이라 한</u> <u>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u> <u>다.</u></p> <p>②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1조 ~ 제6조 (현행과 같음)</p> <p><u>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u> <u>공고) ①</u> <u>시장은 기본계</u> <u>획에 따라 매년 서울시</u> <u>마을공동체 만들기 시</u> <u>행계획(이하 "시행계획"</u> <u>이라 한다)을 수립·시행</u> <u>하여야 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u>④</u> <u>시장은 제1항의 시</u> <u>행계획에 지원대상·지</u> <u>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u> <u>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u> <u>울특별시보 및 서울특</u> <u>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u> <u>고하여야 한다.</u></p>	<p>제1조 ~ 제6조 (개정안과 같음)</p> <p>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 고)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_____ 시행계획과 _____ _____ 지원 원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야 한다.</p>
<p>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 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 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 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 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 다.</p>	<p>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마을공동체 만 들기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 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 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p>	<p>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① (개정안과 같 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1. ~ 10.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10조(지원신청)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 등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다.</p> <p>1. ~ 10.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p> <p>1.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p> <p>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p> <p>제10조(지원신청)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p>	<p>②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p> <p>2. (개정안과 같음)</p> <p>제10조(지원신청) ①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시</p> <p>장 또는 구청장에게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 또는 구청장 _____</p> <p>_____</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1조(평가·포상) ①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u>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u></p> <p>제12조 ~ 제13조 (생략)</p> <p>제3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p> <p>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마</p>	<p><u>업의 추진실적, 사업비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11조(평가·포상)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시장은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관련단체 등이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u></p> <p><u>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u></p> <p><u>④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u></p> <p>제12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p> <p>제3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p> <p>제14조(설치 및 기능) ①</p>	<p>제11조(평가·포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_____ 등 을 _____.</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개정안과 같음)</p> <p>제12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p> <p>제3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p> <p>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u>심의하고</u>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u>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한다</u>.</p> <p>1. (생략)</p> <p>2. <u>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u></p> <p>3. <u>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u>(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p> <p>4. ~ 5. (생략)</p> <p>제15조(구성) ① ~ ③ (생략)</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생략)</p> <p>2. <u>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u></p>	<p>_____</p> <p>_____ <u>심의의결하고</u> _____</p> <p>_____</p> <p>-- <u>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u>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의결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u>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u></p> <p>3. <u>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u>_____</p> <p>_____</p> <p>_____</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15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_____</p> <p>_____</p> <p>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u>마을공동체 만들기</u>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p>	<p>_____</p> <p>_____ <u>심하고</u> _____</p> <p>_____</p> <p>-- <u>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p> <p>② 위원회는 _____</p> <p>_____ <u>심의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u>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u></p> <p>3. <u>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u>_____</p> <p>_____</p> <p>_____</p> <p>4.~ 5. (현행과 같음)</p> <p>제15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_____</p> <p>_____</p> <p>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u>마을공동체 만들기</u>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활</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사람</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⑤ (생략)</p> <p>제1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u>잔여기간</u>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17조 ~ 제18조 (생략)</p> <p><u>제19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p>	<p><u>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u></p> <p><u>3.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학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u></p> <p><u>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민</u></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6조(임기) ① —————</p> <p>—————</p> <p>—————</p> <p>—————</p> <p>—————</p> <p>————— <u>남은 임기로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p> <p><u>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u></p>	<p><u>동한 경력이 있는 자</u></p> <p>3. (개정안과 같음)</p> <p>4. (개정안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6조(임기)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의견청취 등) (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0조 ~ 제23조 (생략)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 ④ (생략) ⑤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 ~ 제28조 (생략)</p>	<p><u>구할 수 있다.</u> 제20조 ~ 제23조 (생략)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_____</p> <p>—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_____ _____</p> <p>----.</p> <p>제25조 ~ 제28조 (현행과 같음)</p>	<p>제20조 ~ 제23조 (생략)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p> <p>제25조 ~ 제28조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연도별”을 삭제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과 지원대상·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나누어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0조제1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지원사업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선정심의회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선정심의회는 주민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보고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는 주민은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관련단체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학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민

제16조제1항 중 “잔여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제5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를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6조 (생략)	제1조 ~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div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div>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① ----- 만들기 시행계획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지원대상·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

현 행	개 정 안
<p>다고 인정되는 사업</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0조(지원신청)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 등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다고 인정되는 사업</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p>제10조(지원신청)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0조의2(지원사업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선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선정심의회는 주민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평가·포상) ① (생략)</p> <p><신설></p> <p>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성하고,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의3(보고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는 주민은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평가·포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관련단체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제3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p> <p>제15조(구성) ① ~ ③ (생략)</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생략)</p> <p>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p>	<p>제3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p> <p>제15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활동한 경력</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⑤ (생 략)</p>	<p><u>이 있는 자</u></p> <p>3.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 단체 및 행정학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p> <p>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민</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u>잔여기간</u>으로 한다.</p> <p>② (생 략)</p>	<p>제16조(임기) ①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 <u>남은임</u>기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 ④ (생 략)</p> <p>⑤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_____</p> <p>_____</p> <p>「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_____.</p>